었다.

이와 같은 국민여론 및 정부의 자동차세 관련세제의 「취득・보유과세 완화, 이용과세 강화」 정책 방향과 자동차세 부담의 지속적 완화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새차・헌차 차등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 개정개요

2001년 7월 1일부터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체증경감하되, 12년이 되는 해 이후부터는 50%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이를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차령별 자동차세 경감율

연수별	2년 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1년 초과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3) 개정조문 및 해설

○ 자동차세 경감 - 법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신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은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에 cc당 세액(80원~220원)을 곱하여 당해 자동차가 1년간 납부해야할 연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업용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차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연세액 계산을 새차와 달리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새로 신설하였다.